

제 2751호 조례

절수 프로그램 관련 가든 그로브 (Garden Grove) 지방 법규 제 15호 40장을 수정하는 가든 그로브 시 시 의회 조례

시 검사의 요약문

본 조례는 시에 대한 물 공급체인 남가주 수도국이 의무화하는 절수 방책에 추가하기 위하여 현재 시가 갖고 있는 절수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갱신하기 위함이다.

가든 그로브 시 의회는 하기의 내용을 결의한다.

본 조례는 가주 수도법 제 375조, 가주 정부법 제 37100조, 제 38742조에 준하여 제정되었다.

수도법제 375(a)조에 요구되는 바, 정기적이며 고지된 일시에 공청회가 열렸으며 본 조례가 시 의회의 결의안으로 심사되었다. 본 의제는 가주 정부법 제 54940조(이하 참조)에 준하여 게재되어 회의 이전 일반 대중이 검토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의회가 본 조례를 심사하는 동안 주민들이 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 자체 보유 또는 유입된 물 공급량의 보호, 절약, 관리는 수도 조달 기관으로서 시의 주된 기능 중 하나이다. 시는 가주 수도법 제 375조가 정하는 모든 행위를 수행하고, 물 조달 및 사용에 대한 법규 및 규정을 제정하며, 절수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효과적인 물 사용을 촉진 및 낭비를 방지하는 권한을 갖는다.

낭비적인 물 사용은 시의 물 공급을 잠재적으로 위협하고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용인될 수 없는 관행이다. 물 낭비를 방지하는 것은 시의 물 공급 저하를 방지하고 절약하며 예방하는,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실행 가능한 일이다.

옥외에서 사용되는 물은 도로 표면을 흘러 하수구를 지나 해변에 이르러 바닷물을 오염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므로, 물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땅 위를 흐르는 물을 줄이거나 막는 관행을 진작하는 것은 공공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다.

오염, 가뭄, 물 공급 시스템 하부 조직의 기능 마비는 시의 물 공급에 있어 긴급 식수 부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상기의 이유들로 인하여 시 의회는 본 조례의 승인이 제 14호 가주 법규 제 15301조 및 15307조에 준하고 가주 환경법 하에서 절대적인 예외 사항임을 결정한다.

본 조례의 목적은 시의 절수 및 물 부족 상황 대책을 수정하기 위함이다.

이에 가든 그로브 시 의회는 하기의 내용을 규정한다.

제1조. 가든 그로브 지방 법 제 14호 40장 전체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제40장
절수 프로그램

내용:

- 010: 적용
- 020: 권한
- 025: 영구 절수 요구사항 - 낭비 금지
- 030: 의무 절수 단계 실시
- 031: 절수 단계별 실시 또는 철회 선언 절차
- 032: 절수 단계 선언의 공표
- 040: 절수 단계
- 041: 제 1 단계 - 자발적 절수—절수 주의
- 042: 제 2 단계 -- 의무적 절수 -- 절수 경계
- 043: 제 3 단계 -- 의무적 절수 -- 절수 경고
- 044: 제 4 단계 -- 의무적 절수 - 비상 절수
- 050: 위반 사항 통보
- 060: 비준수
- 070: 항의 절차
- 080: 위반
- 090: 대안 조치
- 100: 곤경으로 인한 면제

제14.40.010조: **적용**

본 장의 조항들은 시의 수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개인, 소비자, 건물에 적용된다.

제14.40.020조: **권한**

시 관리자 또는 지명된 대리인은 본 장의 조항을 이행할 권한을 부여받고 지시받는다.

제14.40.025조: **영구 절수 요구사항 - 낭비 금지**

하기의 절수 요구사항은 항시 효력을 지니며 영구적이고, 이에는 본 장이 정하는 절수 단계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본 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물의 낭비 및 비합리적인 사용으로 간주된다.

- (a) 물 주는 시각 제한: 모든 날에 태평양 표준시로 오전 10:00시에서 오후 6:00 사이에 잔디, 조경, 기타 식물이 심겨진 부위에 상수도로 물을 주는 것을 금지한다. 단 수동 물 잠금 장치 및 노즐 사용시, 또는 관개 시스템의 조절 및 보수라는 분명한 목적을 위하여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사용은 예외이다.
- (b) 물 주는 시간 제한: 잔디, 조경, 기타 식물이 심겨진 부위에 조경 관개 시스템이나 물 주는 장비를 이용해 상수도로 물을 주는 것은 누군가가 계속적으로 지켜 보지 않는 한 한 작업장마다 물 주는 것이 하루에 15분으로 제한되어 있다. 본 문단은 배출기가 시간 당 2갤런 미만을 배출하는, 저 유량, 물방울 유형으로 날씨에 따라 조정되는 컨트롤러가 있는 조경 관개 시스템, 또는 70%의 효율성 기준에 부합되는 스트림 로터 스프링클러를 사용하는 조경 관개 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c) 과도한 유수 및 물 흐름 금지: 잔디, 조경, 기타 식물이 심겨져 있는 곳에 물을 주거나 관개를 함에 있어 근접 보도, 진입로, 거리, 골목, 하수구, 배수구로 물이 넘쳐 흘러나가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 (d) 단단하거나 포장된 표면에 물을 뿌려 흘러내리게 하는 것 금지: 인도, 산책로, 진입로, 주차장, 테니스장, 패티오, 골목 등 단단하거나 포장된 표면에 물을 뿌려 물이 흘러내리게 하는 금지되어 있으나, 안전이나 위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손으로 들어 옮기는 통 또는 그와 유사한 통을 이용하거나, 수동 물 잠금 장치가 달린, 손으로 사용하는 호스를 이용하거나, 또는 사용한 물을 재사용하는 저용량, 고수압의 청소 기계를 이용, 또는 저용량, 고수압의 물 청소기를 이용하는 때는 예외이다.
- (e) 누수, 고장, 기능 불량 수리의 의무: 물 사용자의 플래밍, 물 배급 시스템을 통한 과도한 물 사용, 누수, 기능 불량은 그러한 문제가 발견되고 시정되었어야 할 합리적인 시간이 흐른 뒤, 그리고 시에서 그에 대한 통보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금지된다.
- (f) 분수대 및 물을 이용한 장식물에 물의 재사용이 요구됨: 물을 재사용하지 않는 분수대 및 기타 물을 이용한 장식물을 작동하는 것을 금지한다.
- (g) 단일 통로 냉각 시스템 설치 금지: 신규 수도 서비스가 필요한 건물에 단일 통로 냉각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 (h) 신규 카 워시 및 신규 세탁소에서 물 재활용 기능이 없는 시스템 설치 금지: 신규 컨베이어 카 워시 및 신규 상업용 세탁소에서 물 재활용 기능이 없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4.40.030조: 의무 절수 단계 실시

시는 예상 공급량과 소비자에 의한 물 수요량을 매일 감독하며, 시 관리자는 공공 토목 공사 감독의 보조를 통하여 시가 신중하게 소비자에 대한 물 공급량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 물 절약 단계를 실시 또는 종결함으로써 추가적인 절약량을 결정한다.

제 14.40.031조: 절수 단계별 실시 또는 철회 선언 절차

예상 물 공급 및 수요량을 매일 감독함에 근거하여 시 관리자는 본 조항에 준하여 적절한 절수 단계의 선언을 권장한다. 제1단계를 제외한 모든 단계에 대한 실시 권장은 (자발적 준수 - 절수 주의) 차기 정기 회의 때 시 의회에 보고된다. 시 의회는 그에 따라 선언을 비준, 선언을 철회, 또는 각 단계에 따른 선언을 지시한다. 선언된 각 단계 및 그와 연계된 법규는 선언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 14.40.032조: 절수 단계 선언의 공표

제1단계를 제외한 모든 절수 선언은 일반 대중에 대하여 공표 또는 고지에 의하여 알려지며, 그러한 공표 또는 고지는 3회 이상 일반 배포되는 신문에 발표되어야 한다.

제 14.40.040조: 절수 단계

시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소비자는 시가 거주용,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정부용 목적 및 여타의 목적으로 공급하는 물이 본 장에서 허가하는 양에 초과하는 방식으로, 또는 본 장에 정해진 시각이나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각이나 기간 동안 사용되도록 의도적으로 만들거나 원인을 제공하거나 이를 허락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어느 때에라도 물을 낭비하거나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없다. 본 장에 나열된 하기의 단계들은 공표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14.40.041조: 제1단계 - 자발적 절수—절수 경계

제1단계는 지역적 가뭄이 있을 시 시에서는 전반적인 절수 및 물 사용 절감에 대하여 협조 정신으로 지원하기를 희망한다. 제1단계에는 하기의 절수 대책이 자발적인 차원에서 적용된다.

- (a) 잔디 및 조경에 물을 주는 것은 14.40.025(a)조에 허가된 시각에 한해 이틀에 한 번씩으로 제한되며, 14.40.025(b)조에 정한 대로 수동 물 잠금 노즐이나 장치를 사용하거나 물방울 이용 관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 또는 관개 시스템을 조정하거나 수리하는 목적을 위하여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사용하는 것은 예외가 된다.
- (b) 자동차, 트럭, 트레일러, 보트, 비행기, 기타 유형의 전동 장치를 물로 씻는 것은 상업용 카워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이상 이틀에 한 번으로 제한된다.
- (c) 수영장, 스파, 연못, 인공 호수 등에 물을 채우는 것이나 다시 채우는 것은 이틀에 한 번으로 제한된다.
- (d) 식당에서는 고객이 요구하지 않는 한 고객에게 물을 제공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 (e) 장식을 위한 분수나 그와 유사한 구조물을 작동하지 않는 것이 권장된다.
- (f) 소화전에서 나온 물의 사용은 소화, 시스템 시험 및 기타 관련 활동, 건축 활동, 공중 보건, 안전, 복지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활동으로 제한된다.

제 14.40.042조: 제2 단계 - 의무적 절수—절수 경계

제2단계는 소비자의 물 수요 전부에 시가 부응할 수 없다는 개연성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에 적용되며, 제2단계 동안 하기의 절수 방책이 의무적 차원에서 적용되고, 재생수 또는 재활용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 (a) 잔디에 물을 주는 것이나 조경 관개는 공사장 미터기 작동 관개를 포함하여 제14.40.025(a)조에 허가된 시각 동안에 지정된 관개 일에만 허락된다. 제2단계 규제에 대하여 “지정된 관개일”은 길거리 주소의 마지막 숫자에 의하여 결정되며, 길거리 주소가 짝수로 끝나는 곳은 짝수 날짜에 잔디나 조경에 물을 줄 수 있으며, 길거리 주소가 홀수로 끝나는 곳은 홀수 날짜에 잔디나 조경에 물을 줄 수 있다.

예외: 제14.40.025(b)조가 정하는 대로 수동 잠금 노즐이나 장치 또는 물방울 이용 관개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관개 시스템을 조정 또는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주 잠시 물을 사용하는 것은 허락된다.

- (b) 도시 수도국 법규가 정한 농업 목적 수도 사용자나 상업용 식물 재배장은 제2 단계 관개 시일 제한에서 면제되나,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물 사용은 모두 짧게 줄이도록 요구된다. 사육장에 주는 물, 또는 번식장에 대한 관개는 어느 때에라도 허락된다.
- (c) 자동차, 트럭, 트레일러, 보트, 비행기, 기타 이동 장비를 물로 씻는 것은 지정된 관개일에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만 허락된다. 허락된 시간에 반드시 손으로 드는 통 또는 그와 유사한 통, 자동 물 잠금 장치가 있는, 손으로 이용하는 호스, 또 사용된 물을 재사용하는 저용량 고수압의 세척 기기를 사용해서 세척해야 한다.

예외: 상업용 카 워시장에서는 어느 때라도 세척이 허락된다. 식품, 상할 수 있는 음식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된 트럭이나 차량을 자주 세척하는 것이 일반 대중의 보건, 안전, 복지를 위한 것일 경우 어느 때라도 세척이 허락된다.

- (d) 수영장, 스파, 연못, 인공 호수에 물을 채우거나 다시 채우는 것은 관개 허용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만 허락된다.
- (e) 골프장, 공원, 학교, 운동장, 경기장에 물을 주는 것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만 허락된다.

예외: 골프장 그린에는 아무 날에도 물을 줄 수 있다.

- (f) 소화전에서 나온 물의 사용은 소화, 시스템 시험 및 기타 관련 활동, 건축 활동, 또는 공중 보건, 안전, 복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활동으로 제한된다.
- (g) 식당에서는 고객이 요구하지 않는 한 고객에게 물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 (h) 장식을 위한 분수나 그와 유사한 구조물을 작동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 14.40.043조: 제 3단계 - 의무적 절수 - 절수 경고

제 3단계는 시에서 소비자의 물 수요 전부를 충족할 수 없을 때에 적용된다. 제3단계 절수 기간 동안 재생수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기의 절수 방책이 적용된다.

- (a) 잔디에 물을 주는 것이나 조경 관개는 공사장 미터기 작동 관개를 포함하여 지정된 관개 일에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만 허락된다. 제3단계 규제에 대하여 “지정된 관개일”은 길거리 주소의 마지막 숫자에 의하여 결정되며, 길거리 주소가 짝수로 끝나는 곳은 짝수 날짜에 잔디나 조경에 물을 줄 수 있으며, 길거리 주소가 홀수로 끝나는 곳은 홀수 날짜에 잔디나 조경에 물을 줄 수 있다.
- (b) 농업 목적 사용자나 상업용 식물 재배장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만 물을 사용할 수 있다. 사육장이나 번식장에 물을 주는 것은 어느 때에라도 허락된다.
- (c) 자동차, 트럭, 트레일러, 보트, 비행기, 기타 이동 장비를 세척하는 것은 금지된다.

예외:

- 1. 상업용 카워시장에서 세척하는 것은 어느 때라도 허락된다.
- 2. 식품, 상할 수 있는 음식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된 트럭이나 차량 등 자주 세척하는 것이 일반 대중의 보건, 안전, 복지를 위한 것일 경우 세척이 허락된다. 그러한 경우, 반드시 손으로 드는 통 또는 그와 유사한 통, 자동 물 잠금 장치가 있는, 손으로 이용하는 호스, 또 사용된 물을 재사용하는 저용량 고수압의 세척 기기를 사용해서 세척해야 한다.
- (d) 부분적으로 재생수 또는 재활용수를 사용하지 않는 상업용 카 워시에서의 물 사용량은 20퍼센트 줄여야 한다.
- (e) 수영장, 스파, 연못, 인공 호수 등에 물을 채우거나 다시 채우는 것은 재정된 관개일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에만 허락된다.
- (f) 연수기 사용은 금지된다.
- (g) 골프 코스, 파크, 학교 운동장, 경기장에 물을 주는 것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에만 허락된다.

예외: 골프장 그린에는 어느 날에든 물을 줄 수 있다.

- (h) 소화전에서 나오는 물을 사용하는 것은 소화, 시스템 테스트 및 기타 관련된 활동 또는 공중 보건, 안전,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에 제한된다.
- (i) 식당에서는 고객이 요구하지 않는 한 고객에게 물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 (j) 장식을 위한 분수나 그와 유사한 구조물을 작동하는 것이 금지된다.
- (k) 모든 누수는 즉시 수리해야 한다.
- (l) 신규 공사 미터기 또는 미터기가 없는 서비스에 대한 허가증은 발부되지 아니한다. 공사에 사용되는 물은 지반 공사 또는 도로 공사에 대하여 사용될 수 없다.

상기에 금지된 물 사용은 공중 보건, 안전, 복지를 위한 경우 및 경찰, 소화 활동 등의 응급 상황을 위한 중요 정부 서비스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4.40.044조: 제 4 단계 - 의무적 절수 -- 비상 절수

제4단계 절수는 극심한 가뭄이 있거나 주정부 물 프로젝트, 도시 수도국, 오렌지 카운티 지방 수도국, 시 기관 등의 물 공급 및 공급 시설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주요 차질이 있을 때 실시된다. 제4단계에는 재생수 또는 재활용수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기의 절수 정책이 적용된다.

- (a) 모든 옥외 식물에 대한 관개가 금지된다.
- (b) 가축에 먹이는 물을 제외하고 농업용, 상업용 식물 재배장에서의 물 사용은 금지된다.
- (c) 자동차, 트럭, 트레일러, 보트, 비행기, 기타 이동 장비의 물 세척이 금지된다.

예외: 식품, 상할 수 있는 음식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된 트럭이나 차량 등 자주 세척하는 것이 일반 대중의 보건, 안전, 복지를 위한 것일 경우 세척이 허락된다. 그러한 경우, 반드시 손으로 드는 통 또는 그와 유사한 통, 자동 물 잠금 장치가 있는, 손으로 이용하는 호스, 또 사용된 물을 재사용하는 저용량 고수압의 세척 기기를 사용해서 세척해야 한다.

- (d) 수영장, 스파, 연못, 인공 호수 등에 물을 채우거나 다시 채우는 것은 금지된다.
- (e) 연수기 사용이 금지된다.
- (f) 모든 골프 코스에 물을 주는 것은 금지된다. 공원, 학교 운동장, 경기장에 물을 주는 것은 금지되나 제14.40.025조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희귀하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 사육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희귀하거나 그 가치가 매우 높은 식물은 예외이다.
- (g) 소화전의 물을 사용하는 것은 소화, 시스템 테스트, 기타 공중 보건, 안전, 복지 유지에 필요한 관련 활동으로 제한된다.
- (h) 식당에서는 고객이 요구하지 않는 한 고객에게 물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 (i) 장식을 위한 분수나 그와 유사한 구조물을 작동하는 것은 금지된다.
- (j) 신규 공사 미터기 또는 미터기가 없는 서비스에 대한 허가증은 발부되지 아니한다. 공사에 사용되는 물은 지반 공사 또는 도로 공사에 대하여 사용될 수 없다.
- (k) 상업, 제조, 가공을 위해 필요한 물은 50퍼센트로 감량한다.
- (l) 에어컨디셔너 용으로 물을 사용할 수 없다.
- (m) 모든 누수는 즉시 수리해야 한다.

상기에 금지된 물 사용은 공중 보건, 안전, 복지를 위해서나 경찰, 소화 활동 등의 응급 상황을 위한 중요 정부 서비스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4.40.050조: 위반 사항 통보

제 14.40.090조에 기술된 상황을 제외하고 시행 이전에 본 장의 조항을 어긴 혐의를 받는 모든 개인은 위반 사항이 기술된 서면 통지를 받으며, 그러한 개인은 그와 같은 위반을 24시간 안에 시정해야 한다.

제 14.40.060조: 비준수

제14.40.090조에 기술된 상황을 제외하고 처음 발생하는 비준수에 대하여 시는 즉시 소비자의 비준수 사항이 시정되기까지 소비자의 수도 서비스 라인에 48시간 이상 동안 유수량 제한 기기를 즉시 설치한다. 기기의 제거 이전에 소비자는 유수량 제한 기기의 설치 및 제거를 위해 50불의 비용을 내야 한다.

제14.40.090조에 기술된 상황을 제외하고 두 번째, 또는 향후 재발되는 본 장의 조항에 대한 비준수에 대하여 시는 소비자의 비준수 사항이 시정되기까지 24시간 이상 동안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수도 서비스가 재개시되기 이전에 소비자는 수도 서비스 재개시를 위한 15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제 14.40.070조: 항의 절차

제14.40.090조에 기술된 상황을 제외하고 소비자는 시 관리자나 관리자가 임명한 자에게 5일 안에 서면 항의 요청을 제출함으로써 항의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한 요청 수령으로부터 10일 내에 서면 결정이 발부되며, 시 관리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자가 내리는 결정은 최종적이다.

제 14.40.080조: 위반

본 장의 의무 요구사항 중 하나라도 어기거나 준수하지 않는 자는 유수량 조절 장치의 설치 여부에 관계 없이 경범죄에 유죄하다. 본 장에 준하여 시에서 최종 명령을 내리면 그러한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거부하거나 준수하지 않거나 소홀히 할 경우 그는 경범죄에 유죄하다. 본 장에 준하여 발부된 시 명령에 대한 위반은 본 장의 각 조항에 대한 위반과는 별도의 범죄 항목이 된다. 본 장의 조항 또는 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본 장의 조항에 대한 여하한 위반이 범해지거나 지속되거나 그에 의하여 허락되는 기간 동안 매일 별도의 범죄로 여겨진다.

제 14.40.090조: 대안 조치

상기의 조항 중 어떤 내용도 (1) 형사 사건 고발 및 해당 법규에 준한 민사 소송 또는 위반을 막는 목적 (2) 본 법규가 허가하는 행정법 위반 딱지 발부/ 벌금 발부를 막는 목적 (3) 법이 허가하는 절차를 시가 밟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4.40.100조: 곤경으로 인한 면제

- (a) 과도하고 과잉한 곤경: 특이한 상황으로 인해 본 장의 특정 조항이 수도를 사용하는 개인 또는 수도가 사용되는 건물에 대하여 과도한 곤경을 초래하여 그 정도가 일반 수도 사용자들 또는 유사한 장소나 유사한 계층의 수도 사용자들에게 미치는 것보다 과잉한 경우, 그러한 개인은 본 장이 정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b) 서면 결론: 면제 허가는 수도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건물에 존재하는 특정하고 독특한 정황으로 인해 일반 수도 사용자들 또는 유사한 장소나 유사한 계층의 수도 사용자들에게 미치는 것보다 과잉하고 과도한 곤경이 증명된다는 서면 결론이 있을 시에만 허가되거나 조건적으로 허가될 수 있다.

1. **신청:** 면제의 신청은 시가 작성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시 의회가 결의한, 반환되지 않는 정액의 처리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2. **증거 서류:** 신청서는 면제 신청의 근거가 되는 모든 내용을 담은 서면 진술을 포함하여, 사진, 지도, 도면, 기타 자료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3. **면제 허가 조건:** 면제 신청은 시 관리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자가 신청서 및 근거 서류, 기타 추가 요청 자료에 근거하고 시 기록에 나타난 해당 건물 수도 사용 정보에 대하여 하기의 모든 조항이 부합된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거부된다.
 - i. 면제를 허가하는 것이 여타의 주민 및 사업체에 부과된 제한 사항과 일관되지 아니한 특권의 수여가 되지 아니할 때.
 - ii. 해당 건물 또는 그 건물의 사용이 처한 특수 정황으로 인하여 본 장의 내용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일반 주민 및 사업체에 미치는 것보다 과잉한 영향이 해당 건물 또는 그 사용에 미칠 때.
 - iii. 그와 같은 면제 권한이 인접한 건물에 지대한 위험이 되지 않으며, 본 장을 시가 시행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으며, 공공의 유익에 해가 되지 않을 경우.
 - iv. 면제를 신청하는 건물 또는 그 건물의 의도된 사용이 처한 조건 또는 상황이 그 성격상 평범하거나 빈발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
4. **승인 권한:** 시 관리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하는 자는 신청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면제 신청을 승인, 조건부 승인, 또는 거부하며, 면제 신청인은 반드시 신속하게 서면으로 결정을 고지받는다. 면제가 승인된 때에 다른 조건이 붙지 않는 한, 의무적 수도 공급 부족 상황 기간 동안 해당 건물은 면제된다. 시 관리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하는 자가 내리는 결정은 최종적이다.

제 2조. 분리 가능성. 본 조례의 어떠한 조항, 항목, 세부항목, 문장, 구, 절, 단어, 부분이 여하한 이유에서라도 적당한 사법권을 지닌 법원에서 무효하거나 위헌으로 결정되었을 시, 그와 같은 판결로써 본 조례의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시 의회는 본 조례의 어떠한 조항, 항목, 세부항목, 문장, 구, 절, 단어, 부분이 무효하거나 위헌으로 결정되는 것과 관계 없이 본 조례의 각 조항, 항목, 세부항목, 문장, 구, 절, 단어, 부분을 채택하였을 것임을 진술하는 바이다.

상기 조례는 2009년 7월 14일에 가든 그로브 시 의회에서 통과되었음.

인증: /s/ WILLIAM J. DALTON
Mayor

/s/ KATHLEEN BAILOR
City Clerk
State of California)
County of Orange) SS:
City of Garden Grove)

KATHLEEN BAILOR 본인은 가든 그로브 시 서기로서 상기의 조례가 2009년 6월 23일
상정되었으며 하기의 투표 결과로 제시되었고,

찬성: 시 의원: (5인) BROADWATER, DO, JONES, NGUYEN, DALTON
반대: 시 의원: (0인)
부재: 시 의원: (0인)

하기의 투표 결과로써 2009년 7월 14일에 통과되었음을 증명한다.

찬성: 시 의원: (5인) BROADWATER, DO, JONES, NGUYEN, DALTON
반대: 시 의원: (0인)
부재: 시 의원: (0인)

/s/ KATHLEEN BAYLOR
City Clerk

가든 그로브 시 의회
제 2751호 조례